

기술적 표준의 법적 성질과 제정원칙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전 경 운*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기술적 표준의 법적 성질과 효과
- III. 표준화절차에서의 법적인 요구
- IV. 마치며

I. 들어가며

1. 기술적 표준의 의의

기술적 표준(technische Norm, standard)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하게 이를 정의하고 있다. 독일표준화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 V.: DIN)의 표준에 대한 개념정의를 보면, “표준은 계획적으로 국가적·지역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하여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물질적인 비물질적인 대상에 대하여 공동적으로 행하여진 통일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의 결과이다”라고 하고 있다.¹⁾ 1974년 6월의 유엔의 유럽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자료에서도 기술적 표준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기술적 표준은 “학문(Wissenschaft), 기술(Technik), 실무(Praxis)적으로 인정되는 결과에 근거하여 모든 이해관계집단의 공동작업과 합의 및 일반적인 동의아래 공공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상술 또는 그 외의 자료로서, 공공의 최대한의 이용을 추구하고 국가적·지역적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구에 의하여 동의되어진 기술적 상술(technische Spezifikation) 또는 그 외의 자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

*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1) DIN-EN 45020 참조.

다.2) 이러한 정의에서의 포함된 기술적 상술(technische Spezifikation)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좀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기술적 상술이란 품질수준, 성능, 안전, 치수와 같은 생산물의 특징 또는 용역의 특징을 확정하는 문서이다. 이러한 문서는 전문용어, 그림기호, 검사와 검사절차, 포장, 표지나 표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술적 상술은 실무를 위한 지침의 형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3)

유럽표준설정기관인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äisches Komitee für Normung: CEN)와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Europäisches Komitee für elektrotechnische Normung: CENELEC)의 기술적 표준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표준(Norm)은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승인된 공공기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활동과 그 결과에 일반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원칙 또는 특징을 확정하는 문서(Dokument)로서, 이에 의하여 주어진 관계에서 최적의 질서척도(optimaler Ordnungsgrad)를 추구하는 문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산업규격 KS A 3001에서는 표준(Standard)이란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이나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단순화를 꾀할 목적으로 물체·성능·능력·동작절차·방법·수속·책임·의무·사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한 결정을 의미하며,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이러한 표준을 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인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독일에서의 기술적 표준의 제정

독일에서의 기술적 표준은 기업분야에서 먼저 발생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이미 금속가공산업 분야에서 작업규정과 작업규정집(Werksnormalien und Normalienbücher)의 형태로 기술적 표준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작업규정집은 19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초기업적 기술적 표준의 제정을 위한 출발이었다. 현재 독일에서는 독일 내부에서 국가적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과 유럽연합의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 및 국제적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이 공동작업을 통하여 독일에 통용되는 초기업적 기술적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4)

2) Peter Marburger, Die Regeln der Technik im Recht, 1979, S. 40ff: 개념정의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Rüdiger Rönck, Technische Normen als Gestaltungsmittel des Europäischen Gemeinschaftsrechts, 1995, SS. 24-26.

3)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Third Meeting of Government Officials Responsible for Standardization Policies, 10-14 June 1974, Document ECE/stand/14, annex I.

4) 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것은 전경운, 「독일법상 기술적 표준의 제정과 제정자의 책임」, 『민사법학』 제26호, 2004. 9, 76-86면 참조.

1) 독일에서의 국가적 표준화 : 독일에는 기술적 표준을 작성하고 공표하는 단체가 현재 약 150개의 사법상의 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 중 중요하고 널리 알려진 단체로서는 독일표준화연구소(DIN), 독일기술자협회(Verein Deutscher Ingenieure: VDI), 독일 전기기술·전기·정보기술협회(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e. V.: VDE),⁵⁾ 독일가스·물전문협회(Deutscher Verein des Gas- und Wasserfachs: DVGW) 등이 있고, 그 외 약 150여개의 표준제정단체가 있다.⁶⁾ 이러한 독일의 표준화단체가 제정한 표준의 숫자를 보면, 독일표준화연구소(DIN)의 표준이 약 2만개 이상이 되고, 그 외의 약 150개의 표준제정단체가 제정한 3만 5천개 이상의 표준이 독일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⁷⁾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기술적 표준제정단체가 독일표준화연구소(DIN)와 독일전기기술자협회(VDE)이다.

2) 유럽지역적 표준화 : 유럽의 표준화기구로서는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äisches Komitee für Normung: CEN)⁸⁾와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Europäisches Komitee für elektrotechnische Normung: CENELEC)⁹⁾가 있다.

5)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그 명칭을 독일 “전기기술자협회(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ker: VDE)에서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6) Peter Marburger/ Thomas Gebhard, Gesellschaftliche Umweltnormierungen, in: Alfred Endres/Peter Marburger, Umweltschutz durch gesellschaftliche Selbststeuerung, 1993, S. 5.

7) Hans Picht, Empfehlungen zur Umstellung TGL-DIN, DIN-Mitt 70, 1991, S. 333.

8) CEN은 1961년 유럽 18개국의 표준화기구가 참가하여 파리에서 1961년에 창설되었다. 1971년부터는 벨기에법에 의한 학문적 목적을 가진 비영리목적의 사법상의 단체(privatrechtliche Vereinigung)로서 브뤼셀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Alfred Warner, Normung und Zertifizierung nach 1992, DIN-MIT. 70, 1991, S. 199). 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에 소속된 각 국가의 상응하는 표준화 기구가 참가하고 있으며, 독일은 독일표준화 연구소(DIN)에 의해서 대표되어 진다. CEN의 정관에 따르면 CEN의 목적은 기술적으로 제한된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하여 무역과 용역거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에 의하면 이러한 목적의 달성 수단으로서는 정치적·경제적·학문적 기구의 협동을 통한 유럽표준의 준비, 국제적 표준의 통일적인 적용, 각 국가 표준의 조화이다. 1992년까지 CEN은 약 240개의 기술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며, 4000개 이상의 표준을 만들었다. 그리고 1992년도의 CEN의 1년 예산은 약 1천6백만 마르크 정도였다. CEN에서는 유럽표준(EN) 이외에도 조화문서(Harmonisierungsdokument: HD), 유럽 예비표준(Europäische Vornorm: ENV)를 공표한다.

9) 1959년 전기기술분야에서의 표준화를 위한 위원회로서 “유럽경제공동체국가에서의 전기기술표준화를 위한 유럽위원회(Europäische Komitee für elektrotechnische Normung in den Ländern der EWG: CENELCOM)”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유럽경제공동체국가에서 존재하는 상이한 전기기술적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한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그리고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

이러한 유럽 표준화의 특별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유럽공동체와 CEN/CENELEC 및 ETSI(유럽통신표준협회,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의 공동작업으로 행하여진다는 것에 있다. 유럽공동체는 처음 구상으로는 법령을 통한 기술적 규정의 상세한 조화를 구상했으나 이의 실현이 좌절되고, 기술적 조화와 표준화의 영역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받아들였다. 즉 유럽공동체의 개별적인 회원국간의 상이한 기술적 표준은 유럽공동체에서의 자유로운 상품거래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일찍이 유럽공동체는 유럽공동체조약(Vertrag zur Gründ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EGV) 제100조¹⁰⁾에 따라서 법률동화 작업을 통하여 상이한 표준을 통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내 입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입법자들에게서도 이러한 표준화과제를 완전히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이에 따라 1985년 5월 7일 유럽이사회에서는 “기술적 조화와 표준화분야의 새로운 구상(Eine neue Konzeption auf dem Gebiet der technischen Harmonisierung und der Normung)”을 결정하였다.¹¹⁾ 이 새로운 구상에 의하면 소위 기본적 안전요구 또는 기타의 안전조건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때그때마다의 유럽공동체 입법지침에서 확정하고, 기술

(CENELEC)는 1972년에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EFTA-Staaten)의 “전기기술 표준화를 위한 유럽 위원회(Europäische Komitee für elektrotechnische Normung: CENEL)”와 “유럽경제공동체국가에서의 전기기술표준화를 위한 유럽위원회(CENELCOM)의 결합으로서 정립되었으며, 1976년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벨기에의 사법상의 단체로서 존재한다(Rudolf Winckler, Europäische Normung in CENELEC, DIN-Mitt 62, 1983, S. 79).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에는 50개 이상의 기술적 위원회가 있으며, 1989년말에 벌써 2만 9천면 이상의 조화된 표준을 제정하였다.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의 정관에 의하면, 이 위원회의 목적도 해당 국가의 기구에 의하여 공포된 국가적인 전기기술적 표준의 조화와 무역장벽의 제거에 있다. 원칙적으로 CENELEC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해당하는 적당한 국제적 표준이 없을 경우에만 표준을 만든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작업결과를 가능하면 수정 없이 CENELEC 회원국의 국가적 표준으로 옮기는데 최선을 다한다(Rudolf Winckler, Verfahren und Organisation der Harmonisierung technischer Normen, in: Technische Regeln im Binnenmarkt, 1991, S.79).

10) 1957년 4월 25일날 체결되고 195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유럽공동체조약은 2001년 2월 26일의 Nizza조약을 통하여 수정되면서, 기존 조약의 조문위치 등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제100조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정된 조약의 제96조에 해당된다. 제96조는 “경쟁저해의 규정의 취급”에 대해서 규정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위원회가 회원국의 상이한 법률과 행정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시장의 경쟁조건을 변조하고 이를 통하여 왜곡을 야기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된 회원국과 협의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하여 왜곡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사회는 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적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필요한 입법지침을 발한다. 위원회와 이사회는 모든 기타 이 조약에서 예상되어지는 목적에 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 Rüdiger Rönck, a.a.O., S. 99; Stefan Griller, Europäische Normung und Rechtsangleichung, 1990, S. 19ff.

적 표준의 상세한 것은 유럽의 표준화기구에 유보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바로 보충적인 표준화과제는 유럽차원에서 활동하는 CEN과 CENELEC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CEN과 CENELEC에 의하여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표준은 각 국가의 국내의 표준화기관을 구속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회원국에 의해서 수정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상이한 국내적 표준은 철회되어야만 한다.¹²⁾ 독일의 DIN에서는 유럽표준을 DIN-EN 표준(DIN-EN-Normen)으로 공표한다.

3) 국제적 표준화 : 세계화에 발맞추어 표준화는 국제적으로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로서는, 전기기술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¹³⁾와 전기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¹⁴⁾가 있다. 현재는 ISO와 IEC의 취급분야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 협의조정기관이 설치되어 있다.¹⁵⁾ 두 기구는 모두 비정부간의 사적인 단체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두 기구는 모두 또한 각 국가의 대표적인 표준화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ISO는 DIN에 의해서 대표되고,¹⁶⁾ IEC는 독

12) Christian Joerges/Josef Falke/Hans-Wolfgang Micklitz/Gert Brüggemeier, Die Sicherheit von Konsumgütern und die Entwicklung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1988, S. 185.

13) ISO는 ‘재화와 용역(서비스)의 국제간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아울러 지적·과학적·기술적 및 경제적 분야에서 국제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적인 표준화 및 그 관련 활동의 발전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국 런던에서 1947년 2월에 15개국의 참가로 설립된 사적인 단체로서, 전기기술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표준을 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기구이다. ISO의 전신은 1926년에 설립된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 단체(Internationaler Verband für Normung: ISA)’로서, ISA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 국제적인 표준화의 역할을 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그 활동은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Helmut Voelzkow, Private Regierungen in der Techniksteuerung, 1995, SS. 121-122). ISO의 중앙사무국은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 80개국 이상의 정회원국과 20개국 이상의 통신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ISO의 조직은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와 이사회, 중앙사무국, 전문위원회(TC)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4년 현재 전문위원회는 185개가 구성되어 있다.

14) IEC는 ‘전기기술 분야의 표준화에 관한 모든 문제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그 결과 국제적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06년에 설립된 사적 단체로서 전기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기구이다.

15) 최근의 정보기술 표준화 추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87년에 ISO와 IEC 사이에 합동전문위원회(ISO/IEC JTC1)를 발족시켰다. 이것은 종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ISO, 하드웨어는 IEC가 각각 표준화를 추진하여 왔는데, 양기구가 밀접하게 협력하여 시의 적절하게 작업을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16) 오늘날 영국은 BSI, 미국은 ANSI, 일본은 JISC 등에 의해서 대표된다.

일전기기술위원회(DKE)에 의해서 대표된다.

ISO와 IEC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표준은 회원국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경우에는 DIN 820 Teil 4 Nr. 4.4¹⁷⁾에서 상세히 언급하듯이 ISO표준이나 IEC표준과 같은 세계적 표준은 수정 없이 ‘DIN-ISO 표준’ 또는 ‘DIN-IEC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¹⁸⁾¹⁹⁾ 이렇게 수정 없이 독일표준으로 인수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해당하는 표준제정 작업이 독일측에 알려져 있고, 또한 독일의 입장표명이 요구되어 졌고, 그리고 독일의 입장표명이 국제적 표준의 제정작업에서 고려되어 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럽의 표준작업에 국제적 표준이 광범위하게 도입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0년 초에 CEN과 ISO 사이에 비인협정(Wiener Vereinbarung), 그리고 CENELEC과 IEC 사이에 루가너 협정(Luganer Vereinbarung)이 체결되었다.²⁰⁾ 이들 협정은 이들 기관 사이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1989년에 체결된 협정과 더불어서, 유럽의 표준화를 점점 더 중요함을 더해 가는 세계적인 표준화 작업에 연결되어지도록 보장을 하고 있다.²¹⁾

II. 기술적 표준의 법적 성질과 효과

1. 기술적 표준의 법적 성질

위의 단체들이 제정하는 기술적 표준에서는, 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제정된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기술적 표준을 준수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표준제정기관들은 기술적 표준을 적용할 것을 강제하지 않고, 표준에 맞추어 생산과 제조를 하거나 또는 그 표준을 무시하는 것은 관계기업에 달려 있다. 즉

17) Grundlagen der Normungsarbeit des DIN, DIN-Normenheft 10, 2001, S. 328.

18) ISO의 세계적인 보급은 1980년의 ‘GATT스탠더드 코드’의 발효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코드에서는 국내표준의 제정시에 ISO 등의 국제표준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에 준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에서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서도 국제적인 표준화 기준에 의한 지침과 국제적인 심사등록제를 확립하고 있다.

19) 일본의 경우는 JIS 표준에서 ISO 9000에 상당하는 것이 JISZ 9900이다. 즉 ISO 9001~9004에 해당하는 것은 JIS에서는 JISZ 9901~9904이다.

20) Thomas Zubke-von Thünen, Technische Normung in Europa, 1999, SS. 648-649.

21) 실제 CEN은 ISO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EN 20000~39999로 등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EN 29000은 ISO 9000을 말한다.

기술적 표준은 법규범(Rechtsnormen)이 아니다. 사적인 단체로서 표준화단체가 일반인을 구속하는 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²²⁾ 즉 私法上的 단체가 그들 구성원의 범위를 벗어나서 구속력이 있는 법을 정하는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헌법상 입법권은 국가에 독점되어 있고, 법률이나 명령에서 기술적 표준에 대한 指示(Verweisung)를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입법권이 표준제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제정된 기술적 표준은 결코 법규범으로 그 지위가 올라 갈 수는 없다. 또한 기술적 표준은 일반적인 관습법으로도 여겨질 수도 없다. 관습법이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오랜 기간동안 그러한 관습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 학문적·기술적 발전의 신속성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이를 통하여 조건 지워지는 기술적 표준의 단기간의 유효기간을 생각할 때,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는 없는 것이다. 또한 관습법이 되기 위한 두번째 요건인 일정범위의 법적 공동체내에서의 일반적인 법적 확신의 요건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²³⁾

물론 기술적 표준은 계약의 체결시에 기술적 표준의 적용을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계약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독일에서 건설청부공사규정(Verdingungsordnung für Bauleistungen: VOB)을 토대로 한 건설계약에 체결의 경우에 발생한다.²⁴⁾ VOB Teil B 제1항 제1문에 의하면, ‘건설급부를 위한 일반 기술적 계약조건’으로서 VOB Teil C에서 작성된 DIN-표준은 계약의 구성요소이다.²⁵⁾ 마찬가지로 법원이 책임소송에서 전기시설 생산자의 주의의무를 일정한 VDE-규정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기술적 표준이 소송당사자 사이의 판결을 통하여 법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문제이다. 왜냐하면 실제적 기판력의 효력을 넘어서 일반적인 선례구속의 원칙이 독일법 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

22) Peter Marburger, a. a. O.(주2), S. 330ff.

23) A. a. O., SS. 337-340.

24) VOB Teil B(Allgemeine Vertragsbedingungen für die Ausführungen von Bauleistungen) 제1항 1 문에 의하면 “이행되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급부의 종류와 범위는 계약을 통하여 정해진다. 또한 건설급부를 위한 일반적 기술적 계약조건도 계약의 구성요소에 해당된다.” 그리고 VOB Teil C는 “Allgemeine Technische Vertragsbedingen für Bauleistungen”으로서 각 종의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른 독일 표준화연구소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25) VOB Teil A: Hinweise zu den Allgemeinen Bestimmungen für die Vorgabe von Bauleistungen DIN 1960, Ausgabe 1992.

VOB Teil B: Allgemeine Vertragsbedingungen für die Ausführung von Bauleistungen DIN 1961, Ausgabe 1992

VOB Teil C: Allgemeine Technische Vertragsbedingungen für Bauleistungen DIN 18333, Ausgabe 1992

26) OLG Hamm, VersR 1971, 805; OLG Celle, VersR 1961, 818 등.

기 때문이다. 실제 어느 누구도 VDE가 원래적인 입법권능(originäre Rechtsetzungsbefugnis)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기술적 표준의 내용은 어떤 자연과학적·기술적 인과경과나 경험칙과 같은 실제의 여건에 대한 묘사는 아니며, 또한 전문가의 예측이나 진단도 아니다. 오히려 기술적 표준은 넓은 범위에서 당위성에 관한 문언(Sollenssätze)이며, 그러므로 사회규범적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이렇게 기술적 표준이 사회규범이라는 것은, 모든 초기업적 기술적 표준에 특유한 기능의 하나인 일반적인 질서정립기능(Ordnungsfunktion)으로부터도 유래한다. 총체적인 표준화조치의 의미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처분 가능한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하나의 선택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통일화를 이루고 또한 기술경제상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질서를 정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한 많은, 이상적으로는 모든 해당자가 표준결정을 따라 줄 때에만 보증될 수 가 있다. 즉 모든 초기업적 기술적 표준은 실무에서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적 표준은 일정한 기술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는 참고(Hinweis)로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방법으로 해결되어야한다는 권고(Aufforderung)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²⁸⁾

결론적으로 기술적 표준은 의료기술에 관한 규정 또는 스포츠경기에 대한 규칙과 같이, 거대한 복합집합체(Komplex)로서 사회규범(sozialen Normen)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표준은 항상 당위성에 관한 문언으로 되어 있지만, 물론 법적인 규범이 아니라 비법적인 사회규범이라고 할 것이다.

2. 기술적 표준의 법과의 관계

1) 서

기술적 표준의 제정자는 고권적인 권능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기술적 표준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법적 규범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술적 표준은 법적 규정(Rechtsvorschriften)으로서 고려되지 않으며 독일민법 제823조 제2항의 의미에서 보호법률(Schutzgesetz)도 아니다.²⁹⁾ 기술적 표준은 오로지 생산자 내지 기술적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자들에 대한 규

27) Thomas Zubke-von Thünen, a. a. O., S. 302.

28) 기술적 표준의 이러한 규칙적인 성질로 인해, 기술적 표준을 오로지 정해진 기술적 질서(규칙)로서, 연습된 실제상의 행동경본으로서, 또는 예견된 전문가의 감정으로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9) Peter Marburger, Die haftungs- und versicherungsrechtliche Bedeutung technischer Regeln, VersR 1983, S. 600

법제정기관의 행위권고(Verhaltensempfehlungen)에 불과하다. 그러나 표준의 이러한 의미는 법(Recht)과 기술적 표준 사이에 아무런 접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이들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들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술적 표준의 법적인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기술적 표준의 법적 한계이다.

2) 기술적 표준과 법과의 관계

기술적 표준은 법적 규범은 아니지만 기술적 표준은 법적 규범에서 직접적인 거명을 통하여 법적으로 될 수 있다. 기술적 표준의 법적 규범으로 제정하는 것은 입법자들의 과제가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필요한 기술적 표준의 대량제정, 불가피한 세부적인 작업의 수행, 기술의 현재 수준에 대한 판단을 입법자에 대하여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적 표준이 법적 규범으로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법률과 명령과 같은 법적 규범에서 기술적 표준의 내용을 구성요건표지(Tatbestandsmerkmal)로서 반복하는 방법과 오로지 기술적 표준을 지시하는 방법이 있다.³⁰⁾ 前者는 법적 규범으로서 편입(Inkorporation)이고,³¹⁾ 後者는 지시(Verweisung)이다.³²⁾ 그러나 지시에서 실제적인 가능성은, 즉 그때그때의 기술적 규범의 유효한 텍스트에 대한 유동적인 지시(dynamische Verweisung)는 입법권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실제로는 의미가 없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시는 대의민주제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독일 기본법(Grundgesetz)상의 법치국가의 원칙에서 유래하는 관련된 법적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Bestimmtheitsgrundsatz)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표준에 대한 유동적인 지시는 독일 기본법상으로 금지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방법이 동원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특별히 자주 법적인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allgemein

30) Thomas Zubke-von Thünen, a. a. O., S. 314.

31) 연방임및시온방지법 제18차 시행령의 제정에 의하여 스포츠시설소음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허용가능한가에 대한 다툼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행령의 내용은 TA-Lärm과 VDI-Richtlinie 2058에서 유래한다. TA-Lärm은 영업법 제16조에 따라서 인가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규정(소음방지에 대한 기술지침(Technische Anleitung zum Schutz gegen Lärm: TA-Lärm))으로서 1968년 7월 16일에 제정되었다. VDI-Richtlinie는 독일기술자협회(Verein Deutscher Ingenieure: VDI)의 소음방지, 먼지와 공기청정에 대한 규칙서를 말한다. 즉 기술적 표준으로서 VDI-Richtlinie 2058이 연방임및시온방지법 제18차 시행령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의 편입이 일어났다고 할 것이다.

32) Hans-Ulrich Karpen, Die Verweisung als Mittel der Gesetzgebungstechnik, 1970, S. 131ff.: Verweisung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하여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anerkannte Regeln der Technik’ 또는 ‘기술의 수준(Stand der Technik)’은 기술적인 규정과 관련하여 많이 등장한다.

특히 행정법적인 법률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에너지경제법(Energiewirtschaftsgesetz)의 두번째 실행명령(DVO) 제1조, 기계보호법(Maschinenschutzgesetz) 제3조, 연방주의 건축법(Bauordnungen der Bundesländer),³³⁾ 영업법(Gewerbeordnung) 제24조 제1항 3호와 제4항 등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과 ‘기술의 수준’은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불확정한 법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판례에 의한 이들의 구체화에서 어떻게 입증의 되고 확정이 되는지, 일정한 방식이 판례에서 스며들어 있는지는 판례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³⁴⁾

3) 기술적 표준의 법적 한계

독일의 경제질서는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triebsbeschränkungen: GWB) 제1조와 제38조 제1항에 의해서 경쟁제한적인 합의나 제안의 금지를 통하여 보증되는 자유경쟁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기술적 표준이 표준규격화(Standardisierung)를 통하여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³⁵⁾ 사실 표준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서도 보았지만, 그러나 표준제정기관의 권고는 경쟁법적인 금지에 관여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한편 경쟁자유 원칙은 다양하게 수정이 될 수 있는데,³⁶⁾ 예를 들어, 경쟁제한방지법 제5조에서는 경쟁제한으로서 합리화카르텔(Rationalisierungskartelle)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동법 제38조 제2항은 일정한 요건 아래서 표준과 유형권고(Normen- und Typenempfehlungen)를 허락하는데, 이는 표준의 국민경제적인 이용이 경쟁제한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써 DIN의 표준은 상당히 특권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들의 경쟁법적인 허락은 동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남용금지에서 한계가 있고, 이의 침해시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제정기관에 대해 유지와 손해배상청구권(Unterlassungs- und Schadensersatzansprüche)이 발생할 수 있다.³⁷⁾

그리고 뒤에서 보게 되는 표준제정의 원칙에서 보듯이 DIN 자체도 영업적·개인적 보호법(Schutzrecht), 특허(Patent)에 대한 고려를 표준제정의 한계로서 고려해야만 한다. 한편

33) 예를 들어 바이에른주의 건축법(BayBO) 제3조

34) BGH, NJW 1965, 1340

35) Arthur Strecker, Einbettung des Normwesens in die staatliche Ordnung, AGR-Schriftenreihe (Heft 140), 1975, S. 6

36) Hans Jürgen, Grundfragen des technischen Normwesens, BB Beilage 4/1985, S. 8

37) Peter Marburger, a. a. O.(주2), S. 568ff.

영업의 법적 보호를 위한 표준의 관계는 DIN-Normen 820 Blatt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 문제는 특히 두 가지 유형으로서 이 문제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보호법과 표준의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일어난 경우이다.³⁸⁾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를 특허권과 관련해서 예를 보면, 특허권과 표준이 충돌이 일어난 경우에, 이러한 경우 생산자로서 표준을 적용하려는 자가 특허소유자와 인가합의나 특허법 제15조에 따라서 강제인가(Zwanglizenz)를 얻지 않는 한 이러한 표준은 효력이 없다. 즉 이러한 표준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DIN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표준은 철회되어야만 한다.

두번째로 특허의 소유자 자신이 표준을 신청한 경우에 일어난다. 그러나 표준은 모든 관계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DIN-Norm 820 Blatt 1에서 특허법적인 상황의 결과로 표준이 단지 특허소유자의 이익에만 기여하는 경우에는 표준이 중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더 높은 관점에서 예를 들어, 환경보호·노동재해방지 또는 기타 공적인 이익에서의 표준목적에 위해서는 표준의 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특허권과 DIN의 자기구속은, 만약 표준이 인가수여를 통한 특허소유자의 동의표시에 의존하여서 효력이 생기도록 만들어진 때에는 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

III. 표준화절차에서의 법적인 요구

1. 公的 課題로서의 기술적 표준화

기술적 표준은 경제생활에서 국제무역의 비관세장벽의 제거,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등에서 커다란 실제상의 의미를 가진다. 실제 다양한 범위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기술적 표준은 경제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된다. 이것은 표준화 작업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권위에 기인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에너지경제법(Gesetz zur Förderung der Energiewirtschaft: EnWG) 제16조 제2항,³⁹⁾ 대규모 난방시설에 대한 명령(Verordnung über Großfeuerungsanlagen - 13. BImSchV) 제8조 제2항⁴⁰⁾과 같이 법적 규범이 기술적 표준과의 관련성

38) Hans Jürgen, a. a. O., S. 9

39) 독일 에너지경제법 제16조 제2항을 보면, ② “에너지의 생산과 전송 및 배부를 위한 시설이, 1. 독일 전기기술자협회의 전기에 대한 기술적 규정. 2. 독일 가스물전문협회의 가스에 대한 기술적 규정을 준수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 표준은 비록 법적 규범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3 Abs. 1 S. 2 GSG), “기술의 수준”(§5 Abs. 1 Nr. 2 BImSchG),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276 Abs. 1 S. 2 BGB) 또는 매매나 도급계약 (§§459ff., 633ff. BGB)의 계약에 맞는 속성의 판단시와 같이 불확정한 법적 개념의 구체화 시에는 현저한 법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⁴¹⁾

그러나 기술적 표준의 성립과정에 눈을 돌려보면,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표준의 완성과 발행이 사법상의 단체를 토대로 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이 크게 주목을 끌게 된다. 또한 단체소속을 통하여 단체구성원이 아닌 범위에서도 그 단체에서 만든 표준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초기업적 기술적 표준은 회원에 대해서만 관련성을 가질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초기업적 기술적 표준은 그 단체의 회원이든 아니든, 표준과 관련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DIN 820 Teil 1에서 말하고 있듯이 기술적 표준은 ‘일반적인 적용을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며, 그 적용은 모든 사람에게 임의적으로 맡겨져 있다.⁴²⁾

특히 초기업적 기술적 표준의 이러한 외부적 효과는 환경법과 기술법에서 많이 관련되는 안전기술적 표준(sicherheitstechnischer Normen)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국가적인 법적 규범과 사적인 기술적 규정과의 법규정 구조(rechtliche Regelungsstruktur)에서의 통합은 바로 환경법과 기술법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⁴³⁾ 기술적 표준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기술적 시설이나 시스템의 생산이나 사용에 대하여 실체적인 안전기술적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면에 국가적으로 제정된 법은 다소간의 보호목적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산업생산과 수업공적 생산, 감독 및 수리 등의 영업분야의 기술적 안전이 달성되게 된다. 전기기술분야와 가스·물공급분야를 예로 들어 본다면, VDE-규정과 DVGW-작업규정(DVGW-Arbeitsblätter) 및 이를 보충하는 각각의 관련된 DIN-표준은, 비록 그들의 적용에 있어서 결코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40) 대규모 난방시설에 대한 명령 제8조 제2항을 보면, ② “킬로그램당 12밀리그램 이상의 니켈을 함유되어 있는 DIN 51603 Teil 1 또는 DIN 51603 Teil 2에 의한 난방용유류가 또는 DIN 51603에 의한 난방용유류로서 다른 액체 연료가 사용되면, 비소·납·카드뮴·크롬·코발트 그리고 구성요소로 주어져서 그들과 결합된 먼지형태의 엠릿시온은 폐가스에서 입방미터당 전체 2밀리그램의 총농도를(폐가스에서 산소의 용적과 관련해서는 3%를) 넘지 못한다. Beuth Vertrieb 유한회사에서 발간되는 표준서식(Normenblätter)은 독일특허청에서도 분명히 수록해 두었다.”

41) Peter Marburger, a. a. O.(주2), SS. 588-595.

42) Grundlagen der Normungsarbeit des DIN, DIN-Nomenheft 10, 2000, S. 87.

43) Peter Marburger, a. a. O.(주2), S. 589.

않지만 실제 광범위하게 법과 동일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이에 따라 표준화단체는 기술적 표준을 만들고 유포시키는 것을 단지 그들 단체 내부의 사무로 여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사회·경제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그들의 활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소간에 걸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결정을 한다. 특히 산업영역에서는 이러한 것이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산업사회형성을 위하여서는 매우 중요하다.⁴⁵⁾ 그러므로 표준화단체의 활동에는 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다시 말하면, 표준화단체는 기술적 표준을 만들고 발간함으로써 실제 공적인 기능(öffentliche Funktion)을 수행하는 것이 된다.⁴⁶⁾

2. 사법적인 단체의 기술적 표준의 제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

실제 많은 문헌에서 사법상의 단체에 의해서 기술적 표준화 활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표준화 활동은 실제 기술의 자치가 아니라 법(Gesetz)과 계약(Vertrag) 이외의 제3의 法源이라는 것이다.⁴⁷⁾ 그리고 사법상의 단체가 표준화 활동을 통한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기초가 실제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국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공공기관에 의한 표준화 활동의 환원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자 목적에 합당한 최선의 해결책으로서 종종 국가과제의 위탁으로서 표준화활동이 제시되기도 한다. 즉 표준화단체가 계속적으로 기술적 표준을 만들고 발간을 하되, 이것은 단지 자유로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표준화단체에 위탁된 과제의 수행자(Sachwalter)로서 단지 이러한 활동을 수행케 하는 것이다.⁴⁸⁾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제안은 공적 과제와 국가적 과제를 부당하게 대등하게 취급하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⁴⁹⁾ 기술을 가진 거래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적당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확실히 국가적 과제에 속한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상세하게 안전기술적

44) A. a. O., S. 589.

45) Thomas Zubke-von Thünen, a. a. O., S. 157ff.

46) Peter Marburger, a. a. O.(주2), S. 588.

47) Johannes Backherms, Zur Einführung: Recht und Technik, JuS 1980, S. 14.

48) Ulrich Battis/ Christoph Gusy, Technische Normen im Baurecht, 1988, S. 35ff.; Herbert Krüger, Rechtsetzung und technische Entwicklung, NJW 1966, S. 617ff.; Rodolf Lukes, Das Atomrecht im Spannungsfeld zwischen Technik und Recht, NJW 1978, S. 246.

49) Peter Marburger, a. a. O.(주2), SS. 590-591.

요구를 규정해야한다는 것은 또한 기본법(Grundgesetz)상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적 기술적 표준단체들과 국가의 특별한 협력은 목적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사적 단체의 학문적·기술적 사정에 대한 법적인 규정에 있어서 과제의 수행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⁵⁰⁾ 한편으로 국가기관으로의 표준활동의 환원시에는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사실 표준을 만드는 위원회가 국가의 지시나 감독질서안으로 편입이 된다는 것은 형식상의 정당성은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안 자체에 관한 문제에서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좋은 기술적 표준총서를 제정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남용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능한 전문지식인을 동원하고 가능한 한 남용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국가 기관보다는 사적인 전문단체가 전문지식의 동원에 있어서는 우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사법적인 규정을 통한 절차보장은 국가의 공공기관에서와 똑 같이 실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상의 단체를 토대로 한 전통적인 기술적 표준활동은 위와 같이 여러 점에서 목적에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유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도외시하고 표준단체에의 활동에 원천적인 국가적 간섭은 기본법 제9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활동의 자유(Vereinigungsfreiheit)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표준화 절차와 기본원칙

1) 개관

개개의 표준제정과정에서의 표준화절차의 준수는 기술적 표준의 기능과 법적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 독일의 여러 표준제정기관들이 작성한 기술적 표준은 통일적이며 사안에 따라 각기 설정된 기본원칙에 의하여 진행되는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다.

기술적 표준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그 草案이 작성된다. 이들 전문가들은 한편으로는 예컨대 工學, 自然科學 등의 과학을 대표하는 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그때의 표준제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 예컨대 업계의 설계 및 제작전문가, 기술감독기관, 시험소 및 관할관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⁵¹⁾ 또한 위원회의 구성원은

50) Fritz Ossenbühl, Kernenergie im Spiegel des Verfassungsrechts, DÖV 1981, S. 2; Klaus Vieweg, Zur Einführung: Technik und Recht, JuS 1993, S. 897.; Peter Marburger, a. a. O.(주2), S. 588ff.

이해관계집단, 즉 경제계, 소비자, 관청 및 학계의 동의를 얻어 파견된다.

위원회의 작업은 특정한 표준의 제정신청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된다. 통상 制定申請은 경제계로부터 이루어지나 때로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될 수도 있다. 위원회가 표준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草案을 작성한다. 이 초안은 공표되며 전문잡지에 그 공표사실을 게재한다. 이 초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누구나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에 대하여 위원회가 결정하나 만약 초안과 이의와의 차이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仲裁 또는 調停節次가 개시된다. 표준제정의 절차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된 형태의 표준에 대한 의결과 특정의 인쇄물을 통한 공표로써 종료한다. 이 기술적 표준의 인쇄물은 누구나 그 구독이 가능하며 전문잡지나 부분적으로는 연방관보에서 그 발행을 알려주고 있다.

즉 표준의 제정시에는 DIN-Normen 820 Teil 1에서 확립된 몇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야만 한다. 그 무엇보다도 표준은 자기목적(Selbstzweck)적이 아니라 공공(Allgemeinheit)에 봉사하고 공적인 이익에 기여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서 있어야만 한다.⁵²⁾ 이러한 대원칙 아래에서 DIN의 자발적인 자기구속을 의미하는 세부적인 원칙, 즉 절차적, 법적 그리고 기술-학문적 및 경제적 원칙이 지켜져야만 한다.

(1) 절차준수의 원칙(Verfahrensmaximen) : 표준화단체는 표준제정절차에 필요한 절차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지침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먼저 표준제정작업의 시작 전에 표준제정의 필요성 검토가 행해져야만 한다. 그리고 표준제정작업에 관계된 집단⁵³⁾과 공공이 참여하여야만 한다.⁵⁴⁾ 또한 다른 독일 표준총서의 부분 및 국제적인 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제정되는 표준이 그 밖의 다른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표준을 고려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만 한다. 즉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제정절차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2) 법적 원칙(Rechtliche Maximen) : 표준제정작업은 경쟁의 제한을 목표로 해서는 안

51) Hans Jürgen, a. a. O., S. 5

52) A. a. O., S. 6

53) 관계된 집단(Interessierte Kreise)에는 사용자, 관청, 직업조합, 직업학교, 전문대학, 대학, 상공인, 수공업자, 제조자, 시험연구소, 보험업자, 기술적 감독자와 소비자 등이 이에 속할 것이다 (Werner Brinkman, Die Verbraucherorganisation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hre Tätigkeit bei der überbetrieblichen technischen Normung, 1976, S. 93)

54) Siegfried Hahn-Woernle/Helmut Reihlen, Normung und Entbürokratisierung, DIN-Mitt. 63, 1984, S. 245ff.

된다. 또한 특허(Patente)나 기타의 영업적인 보호법(sonstige gewerbliche Schutzrechte)을 통하여 보호되는 대상에 관계해서도 아니된다. 이러한 법적 원칙으로서 일정한 범위에서 언급된 법적 규범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3) 기술-학문적 원칙(Technisch-wissenschaftliche Maximen) : 표준제정작업은 그 당시의 학문과 기술의 수준(Stand der Wissenschaft und Technik)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와 고려가 행해져야만 하고, 표준제정을 통하여 기술적인 발전이 방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표준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해석과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만 한다.

(4) 경제적 원칙(Wirtschaftliche Maximen) : 표준제정작업은 표준의 임무인 기술적·경제적 통일화의 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한다. 즉 표준제정결과는 현실에서의 실행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경제적인 한계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표준제정절차에서의 내용적으로 중요한 제정원칙을 다시 한번 핵심용어로서 표현해 본다면, 전문지식(Sachverstand), 이익조화(Interessenausgewogenheit), 공공의 참여(Verfahrens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표준의 발표와 개정(Publikation und Revision der Norm), 절차구속성(Verfahrensverbindlichkei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⁵⁵⁾ 이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기술적 표준의 중요한 제정원칙

(1) 전문지식의 원칙

기술적 표준을 제정하려는 자는 그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전문지식(Sachverstand)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법적인 관점에서든 표준제정활동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구는 전문능력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해당하는 기술적 표준과 관련되는 사실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작성 소위원회(Arbeitsausschüsse)의 전문인력의 임용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술자는 시설운영자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관찰하며, 기술적 감독의 전문가의 문제시각은 다시 다르며,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시각은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표준 내용에 관련된 전문분야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상이한 활동분야의 전문

55) Peter Marburger/Thomas Gebhard, a. a. O., S. 8.

가도 표준제정 위원회에 참석이 보장되어야 한다. 실제 독일의 DIN의 경우를 보면, 전문가들은 한편으로는, 공학, 자연과학 등의 과학을 대표하는 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 그때의 표준제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 예컨대 업계의 설계 및 제작전문가, 기술감독기관, 시험소 및 관할관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구성원이 DIN의 회원이 아니면, 생산자나 거래자 등의 전문분야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되고, 소비자 및 행정청 그리고 학계에서도 참여하게 된다.⁵⁶⁾

둘째로 표준화 단체는 해당하는 전문문헌들의 문서정리를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해당하는 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학문과 기술의 수준(veröffentlichte Stand von Wissenschaft und Technik)에 그들이 제정하는 표준이 도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제정시에 이미 시대에 뒤지거나 기술적으로 낡아 버린 기술적 표준은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2) 이익조화의 원칙

표준제정과정에서 모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잡힌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이 실제 어려운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표준제정 위원회의 구성원은 오로지 기술적·학문적 전문가로 구성되면 되고 이러한 범위 안에서만 공동작업을 위하여 소집되면 된다는 입장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으며, 독립적이고 세분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표준제정단체의 표준제정위원회(Normenausschüsse)는 개개의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간섭을 배제하지만, 그러나 단체의 구성원범위는 행정청, 기술적 감독이나 학계 외에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련된 산업의 기업체에서 보내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⁵⁷⁾ 그들의 공동작업은 포기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규정총서는 기술적 실무의 경험과 산업적 연구의 지식도 규정작업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각개의 경우에 ‘학문과 기술의 수준’에 필요하고도 희망하는 근접은 이렇게 해서 보증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서는 학문적·기술적 지식 이외에 ‘경제적 이해(wirtschaftliche Interessen)’도 표준제정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⁵⁸⁾ 이러한 관점은 표준화

56) Hans Jürgen, a. a. O., S. 5

57) Jutta Rühl, Normung und gesetzliche Regelungen für den Umweltschutz, DIN-Mitt. 73, 1994, S. 154.

58) 표준화작업을 통하여 표준화과제의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평준화적인 해결을 이루어야만 한다. 즉 표준화작업 결과의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계를 분명히 고려해야만 한다(Hans Jürgen, a. a. O., S. 6).

단체에서도 오늘날 종종 승인되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개인적인 구성의 원칙(Grundsatz der persönlichen Mitgliedschaft)’에 의하여 명예직의 위원회구성원들은 그들을 파견한 단체나 회사로부터의 지시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적 책임만을 진다고 보았지만, 오늘날 유효한 절차규정에 의하면 명예직의 회원들은 그들을 파견한 단체 등으로부터 표준작업 위원회에서의 활동시에 전권이 위임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autorisiert und entscheidungsbefugt)고 본다.⁵⁹⁾⁶⁰⁾ 또한 DIN 820 Teil 1과 VDE 0023 Teil 1에서는 일치하여, 기술적 표준의 작성시에는 각개의 학문과 기술의 수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wirtschaftliche Gegebenheiten)도 고려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¹⁾ 실제 경제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익단체에 의해서 행해지고 한편 공공의 복지에도 봉사해야 하는 자발적인 공동작업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나타난다. 실제 다양한 이익이 주장될 때에, 공공복리의 증진은 제도화로서만 보장될 수 있다. 그리고 표준제정 작업시에는 일반적인 정책상의 이익대표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학문적·기술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데, 바로 표준화조치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와 표준화조치를 통하여 잠재적으로 연관되는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러한 광범위한 이익대표는 비록 표준화단체가 표면적으로는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표준화단체의 현재의 실무에서 실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⁶²⁾ 이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첫째는 표준제정에 있어서 일정한 이해관계자들이, 예를 들어 중간규모나 소규모의 기업, 비영리적 소비자단체 등이 경제상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표준화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소비자단체는 1974년 이후부터는 DIN의 조정위원회(Lenkungsgremien)에서 소비자권고(Verbraucherrat)를 통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의 상태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개선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대로 소비자단체 및 그와 관련되는 단체들이 표준위원회들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학문적·기술적 전문가의 충분한 숫자를 확보하

59) DIN 820 Teil 1, "Normungsarbeit Grundsätze", Nr. 3. 4.

60) “표준위원회의 지침(Richtlinie für Normenausschüsse im DIN, Juni 1990)”, 10. 5에 의하면 명예직 구성원이 그들을 파견한 단체 등으로부터 탈퇴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위원회에서의 활동도 종료된다고 한다(Grundlagen der Normungsarbeit des DIN, 6. Aufl.(1995), S. 72).

61) DIN 820 Teil 1, Abschnitt 5. 7.(Grundlagen der Normungsarbeit des DIN, 7. Aufl.(2001), S. 86).

62) Helmut Voelzkow, Ist die technische Normung demokratisch?, DIN-Mitt. 75, 1996, S. 193ff.; Von Renate Mayntz, Entscheidungsprozesse bei der Entwicklung von Umweltstandards, Die Verwaltung 1990, S. 144ff..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약점이 제거될 수 없는 한, 공공기관, 기술적 감독 또는 학계의 대리자들이 소비자관련 문제에서 소비자의 이해를 강하게 대리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표준화단체들은 이러한 대상대표(Ersatzrepräsentation)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차규정에도 이러한 것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둘째 원인은 표준화단체의 절차지침(Verfahrensrichtlinien)들이 구속력이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표준화 작업의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DIN 820 Teil 1에 의하면, “표준 제정 소위원회(Arbeitsausschüsse)의 구성은 적절한 관계에서 이해 관련된 범위의 사람들이 표준제정시에 참석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³⁾ 그리고 VDI의 표준제정에 관한 원칙과 지시에 관한 규정 VDI 1000을 보면, “위원회와 하위위원회는 가능한 한 모든 이해관련자들이 적절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야 한다”⁶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우에 적절히 대표된다는 이러한 규정은 넓은 재량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조화된 대표 참석이 법적 규정안으로 기술적 표준이 수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절차 보장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표준화에 있어서 환경적 이해의 강한 고려를 위해서 1992년 10월 22일에 독일 환경부와 DIN 사이에 하나의 협정⁶⁵⁾이 있었다.⁶⁶⁾ 이러한 협정을 근거로 하여 DIN에는 두개의 기구, 즉 “환경보호를 위한 조정기구(Koordinierungsstelle Umweltschutz: KU)”와 “환경보호의 기반을 위한 표준위원회(Normenausschuß Grundlagen des Umweltschutzes: NAGUS)”가 설치되었다. DIN에 설치된 환경보호를 위한 조정기구(KU)는 표준제정작업시에 가능한 환경관련성을 검토하고 표준화절차에서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정을 통지한다. 또한 KU는 환경관련 모든 이해관계집단(연방과 연방주의 환경기관, 산업계, 환경단체,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및 학계)의 전문조언을 통하여 이미 존재하는 표준에서의 환경관련 적절성과 환경친화성을 검토한다.⁶⁷⁾

63) DIN 820 Teil 1, "Normungsarbeit Grundsätze“, Nr. 3. 4.

64) “Die Ausschüsse und Unterausschüsse werden so zusammengesetzt, daß im Rahmen des möglichen alle berechtigten Interessen angemessen vertreten sind”(VDI 1000, Richtlinien; Grundsätze und Anleitungen, Nr. 3)

65) 이 협정의 정식명칭은, “Vereinbarung gestützt auf §10 Abs. 1 des Vertr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DIN vom 5. Juni. 1975 zwischen dem Bundesminister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orsicherheit(BMU) und dem DIN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 V. über die Berücksichtigung von Umweltbelangen in der Normung”

66) Umwelt(BMU) 1993, S. 8ff.; Horst von Holleben, Normung und Umwelt, in: Festschrift für Wolfgang Ritter, 1997, S. 589f..

67) Umwelt(BMU) 1993, S. 9.

DIN에 1993년 2월 15일에 설립된 환경보호의 기반을 위한 표준위원회(NAGUS)는 국가적, 유럽적 그리고 국제적 분야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한 전문분야의 표준화적 행위규정을 발전시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⁶⁸⁾ 일반적으로 표준화에서는 생산과 생산절차에서 기술적 상술을 확정하는 것이지만, 또한 표준은 경제과정에서의 행위자의 행위규정(Verhaltensregeln)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호환적인 정의(Definition)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NAGUS에는 주제별로 전문용어(Terminologie), 환경관리체계, 생산에서의 생태결산(Ökobilanzen für Produkte), 그리고 환경기호(Umweltkennzeichen)를 위한 전문위원회(Arbeitsgremien)가 설치되어 있다.⁶⁹⁾ 이러한 두 기구를 통하여 표준화에서 환경보호의 이해를 의미 있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DIN에서의 표준화작업에서 환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존재하던 결함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3) 공공대중의 참여

공공대중의 표준제정 절차참여의 필요성은, 기술적 표준은 사실 좁은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표준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강도로 일반국민의 이해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대중이 생성되는 표준의 내용에 간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대규모의 표준화단체는 예외 없이 이러한 명령은 이행하고 있다.⁷⁰⁾ 표준의 초안은 공표되어지고, 초안의 발간에 대해서는 전문잡지를 통하여 공공대중에 알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4개월의 이의기간(Einspruchsfrist) 내에 누구나 초안에 대하여異議나 변경 또는 보충제안을 이유서와 함께 표준초안을 작성한 표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만일 이의가 있으면 이의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의자에게 진술이 보장되는 위원회에서 이의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만약 의견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조정절차(Schlichtungsverfahren)가 개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번의 중재절차(Schiedsverfahren)가 개시될 수 있다.⁷¹⁾

(4) 표준의 공표와 개정에서의 원칙

기술적 표준은 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공표(발간)되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68) A. a. O., S. 9.

69) Jutt Rühl, Normung und gesetzliche Regelungen für den Umweltschutz, DIN-Mitt. 73, 1994, S. 155.; Horst von Holleben, a. a. O., S. 860.

70) DIN 820 Teil 4, Normungsarbeit: Geschäftsgang; VDI 1000, Abschnitt 4; DVGW 100, "Grundsätze für das DVGW-Regelwerk" usw.

71) 보다 자세한 것은, DIN 820 Teil 4, Nr. 3. 4. 7 참조.

기술적 표준은 인쇄물로서 발간이 되며 누구나 유상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 표준의 공포(발간)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전문잡지나, 부분적으로는 연방관보에도 소개가 된다.

공공대중이 발간된 표준의 자유로운 구입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적 높은 표준의 구입가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DIN의 전체 표준의 갯수는 약 2만개에 달하는데, DIN 표준의 전체 가격은 약 80만 마르크에 달하고, 약 7장의 A4용지로 구성된 하나의 DIN표준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40마르크로써 상당히 비싼 편이라고 할 것이다.⁷²⁾ 하지만 동시에 표준단체가 그들의 활동비용의 아주 많은 부분을 표준판매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⁷³⁾ 물론 표준구입가격이 너무나 높아서 사실상의 구입장벽이 되고 이것이 기술적 표준의 광범위한 적용에 위험이 될 정도로 구입가격이 높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대표적인 표준단체에서 이러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⁷⁴⁾

기술적 표준은 끊임없는 규칙적인 개정(Revision)이 요구된다. 기술적 표준의 이러한 요구는 학문과 기술의 수준이 진전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이미 만들어진 표준이 빠르게 낡은 것이 되고 기술적으로 추월당하게 된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특히 안전기술적 표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현저하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기술적 표준은 규칙적인 시간간격 안에 재검토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거나 완전히 취소되어야만 한다. 현재 독일의 표준화단체는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DIN, VDE, VDI의 현재의 절차지침(Verfahrensrichtlinien)에 의하면, 적어도 매 5년마다 기술적 표준이 학문과 기술의 수준에 상응하는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⁷⁵⁾ 5년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기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분야에는 5년이라는 기간이 장기간이 될 것이므로, 약 3년으로 단축되어야만 할 것이다.⁷⁶⁾ 그 외에 표준화단체는 표준에 대한 정기적인 개정을 넘어서 일종의 생산물관찰의무

72) Hans Picht, Empfehlungen zur Umstellung TGL-DIN, DIN-Mitt. 70, 1991, S. 333.

73) 1995년에 DIN의 전체수입은 1억 5천 8백만 마르크였는데, 그중 66.4%가 표준판매수입이었고, 18%가 경제계에 의해서 그리고 15.6%가 공공단체(öffentlicher Hand)가 분담하였다(Thomas Zubke-von Thünen, a. a. O., S. 268).

74) 구동독의 국가적 표준인 TGL은 표준화법(Standardisierungsverordnung)에 따라서 국민경제에 적용이 강제되었고, TGL-표준의 구입가격은 매우 저렴했었다. 그러나 독일 통일로 인해서 DIN-표준이 비구속적이긴 하지만 독일 전역에 적용됨에 따라서 그 보급이 문제되었는데, 왜냐하면 DIN-표준은 그 구입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DIN-문고판(Taschenbücher)으로의 보급이 값싸게 해결할 수 있다는 논의를 하면서, 그러나 표준화가 매우 역동적인 일(dynamische Angelegenheit)이라는 점에서 DIN-문고판에 수록된 표준은 이미 낡은 것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Hans Picht, a. a. O., S. 333).

75) DIN 820 Teil 4, Nr. 5; VDI 1000, Nr. 4.7.

(Produktbeobachtungspflicht)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⁷⁷⁾ 즉 표준화단체는 표준규정의 적용으로 얻어지는 경험에 대한 정보를 특히, 사고에 대한 정보를 즉시 얻어서, 가능한 한 빨리 불시의 결함(Fehler)을 제거할 수 있도록, 사전배려를 해야만 할 것이다.

(5) 절차구속성의 원칙

위에서 검토한 표준제정절차에 필요한 요건은 각개의 표준제정절차에서 임의적이 아닌 구속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표준화단체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예외 없이 절차지침이 준수되도록 주의하여야만 한다.⁷⁸⁾ 만약 이에 위반하면 기술적 표준의 법적인 의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절차에 위반한 기술적 표준은 불확정한 법적 개념의 구체화로써 타당시될 수가 없을 것이다. 즉 법적으로 요구된 안전요구와의 기술적 표준의 일치성에 대한 추정은 더 이상 적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입증효과의 인정은 문제되는 표준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대표적인 참여와 일반 공중의 참여아래 전문가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고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⁷⁹⁾ 그러므로 예를 들어, 문제되는 표준의 마지막 개정이 5년 이상을 경과했다든가, 표준초안의 발표와 일반대중의 이의신청에 대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등, 또는 개별적인 이해관련자그룹, 예를 들어, 소비자단체나 공공의 이해가 표준의 제정시에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통하여 이러한 추정에 대한 토대를 실효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제되는 표준이 절차위반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법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입증에서의 추정의 효과(Vermutungswirkung)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4. 소결

독일에서의 기술적 표준은 비록 사적 단체에 의해서 제정되지만, 실제 법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하나의 사회규범으로서 사회·경제적 의의 등이 심대하므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제정절차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정절차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기술적 표준이 광범위하게 현실에서 사용될

76) Peter Marburger, Rechtliche Bedeutung sicherheitstechnischer Normen, in: VDE(hrsg), Risiko-Schnittstelle zwischen Recht und Technik, 1982, S. 145.

77) 표준제정단체의 표준은 인쇄물로서 동산에 해당되고, 이로써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2조의 의미에서 제조물이 됨으로써, 표준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표준제정단체의 제조물책임이 인정된다(자세한 것은 전경운, 전계논문, 98-103면 참조).

78) Peter Marburger/ Thomas Gebhard, a. a. O., S. 8.

79) Peter Marburger, a. a. O.(주76), S. 146.

수 있고, 또한 현실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술적 표준이 제정되고 있지만,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기술적 표준의 제정원칙이 있으면서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 표준의 제정을 정부기관 내지는 공적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이 기술적 표준의 제정원칙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문지식의 원칙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IV. 마치며

지금까지 독일에서의 기술적 표준의 제정과 기술적 표준의 법적 성질 및 법과의 관계, 그리고 기술적 표준의 제정원칙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127조 제2항에서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이 국가적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과 “산업표준화법”을 주축으로 몇 개의 산발적인 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산업표준화 관련기관으로서는 통상산업부, 국립기술품질원, 표준화능력평가기관,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표준원 등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도 이에 관련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적 표준이 독일처럼 광범위하고 실효성 있게 제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표준이 제정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더욱 심화되고,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표준화는 더욱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법학에서도 기술적 표준의 법과의 관련성 등이 규명되어야 할 법적 과제이며, 특히 기술적 표준에 대한 연구는 환경법과 기술법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기술적 표준, 표준화, 독일표준화연구소, 기술적 표준의 법적 성질,
공적 과제로서의 기술적 표준화, 표준화절차의 원칙

【참 고 문 헌】

- 김해룡, 「환경기준에 관한 법적 문제」, 『환경법연구』 제19권, 1997. 12.
- 전경운, 「기술법의 발전과 향후의 연구과제」, 『환경법연구』 제26권 4호, 2004. 12.
- _____, 「독일법상 기술적 표준의 제정과 제정자의 책임」, 『민사법학』 제26호, 2004. 9.
- Anselmann, Norbert, Technische Vorschriften und Normen in Europa: Harmonisierung und gegenseitige Anerkennung. Unternehmenspraxis in der EG, Bd. 17. 1991.
- Brinkman, Werner, Die Verbraucherorganisation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hre Tätigkeit bei der überbetrieblichen technischen Normung, 1976.
- Budde, Eckart/Reihlen, Helmut, DIN-Normen und Rechtsvorschriften. DIN-Mitt. 61 (1982), S. 439-442.
- Cahn, Andreas, Produkthaftung für verkörperte geistige Leistungen, NJW 1996, 2899.
- J. Debelius/G. Gross, Haftung des DIN für seine Norm, in: DIN(hrsg), Technische Normung und Recht, 1979(DIN-Normungskunde Heft 14), S. 199ff.
- Griller, Stefan, Europäische Normung und Rechtsangleichung, 1990.
- Karpen, Hans-Ulrich, Die Verweisung als Mittel der Gesetzgebungstechnik, 1970.
- Lukes, Rudolf, Die Bedeutung der sog. Regeln der Technik fuer die Schadensersatzpflicht von Versorgungsunternehmen, in: Regeln der Technik und Schadensersatz, 1969, S. 22 ff.
- Marburger, Peter, Die Regeln der Technik im Recht, Habilitatn, 1979.
- ders, Technische Normen im Recht der technischen Sicherheit, BB Beilage 4/1985, 16.
- ders, Grundstückserwerb und Altlastenhaftung in zivilrechtlicher Sicht, in: Jahrbuch des Umwelt- und Technikrechts 1987, UTR Bd. 3, Dsseldorf 1987, 169.
- Marburger, Peter/Elders, Rainald, Technische Normen im Europäischen Gemeinschaftsrecht. UTR 27, 1994.
- Marburger, Peter/Juergen, Hans/Khler Helmut, Rechtsfragen der technischen Normung, BB Beilage 4/1985.
- Rönck, Rüdiger, Technische Normen als Gestaltungsmittel des Europäischen Gemeinschaftsrechts, 1995.

Rühl, Jutt, Normung und gesetzliche Regelungen für den Umweltschutz, DIN-Mitt. 73, 1994, 155.

Toft, Hans-Peter, Umweltschutz und technische Sicherheit im Unternehmen, PHI 1993, 236.

Vieweg, Klaus, Zur Einföhrung: Technik und Recht, JuS 1993, 894.

Voelzkow, Helmut, Ist die technische Normung demokratisch?, DIN-Mitt. 75, 193.

von Thünen, Thomas Zubke, Technische Normung in Europa, 1999.

Zemlin, Hans, Die berbetrieblichen technischen Normen - ihre Wesensmerkmale und ihre Bedeutung im rechtlichen Bereich, Kln u.a., 1973.

【Zusammenfassung】

Rechtsnatur von technischen Normen und Grundsätze des Normungsverfahrens

Chun, Kyoung Un

Zahlreiche technische Normung werden durch den 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ker(VDE), den Verein Deutscher Ingenieure(VDI), das Deutscher Verein des Gas- und Wasserfaches(DVGW), das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DIN) festsetzt. Außer den oben genannten Verbänden und Vereinen gibt es in Deutschland gegenwärtig ca. 150 Verbände, die technische Normen festsetzen und öffentlich bekannt machen. Unter diesen Verbänden spielt das DIN die zentrale Rolle.

Aber die Erkenntnis, verschiedene nationale technische Normen zahlreicher Länder verhindern als nichttarifäre Handelshemmnisse freie internationale Handel, hat dazu geführt, daß seit Anfang des 20. Jahrhunderts viele Länder in bezug auf technische Normen international zusammenarbeiten. Demnach entstanden überationale Organisationen wie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zation(ISO),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und Europäisches Komitee für Normung(CEN), mit dem Ziel, Normungsergebnisse einzelner Mitgliedsländer zu harmonisieren. Bei der zunehmenden Wechselwirkung der Weltwirtschaft und dem Zuwachs der internationalen Handel wird die mit den nationalen Normen vieler Länder harmonisierenden internationalen Normen immer sinnvoller.

Technische Normung sind keine Rechtsnorm. Als private Vereine können die Normungsverbände nicht allgemeinverbindliches Recht setzen. Das Rechtsetzungsmonopol liegt nach dem Verfassungsrecht beim Staat. Rechtsetzungsmacht wächst den Normenorganisationen auch nicht dadurch zu, daß Gesetze oder Rechtsverordnungen auf technische Normen verweisen. Ebenso wenig werden hierdurch die in Bezug genommenen technischen Regeln in den Rang von Rechtsnormen erhoben.

Technische Normen haben im Wirtschaftsleben große praktische Bedeutung. Sie werden - je nach Inhalt in unterschiedlichen Ausmaß - auf allen Stufen des Wirtschaftsablaufs angewandt. Sie beruht auf der fachlichen Autorität der Normungsgremien, den der Verwendung genormter Erzeugnisse, Leistungen und Verfahrensweisen verbundenen Rationalisierungsvorteilen, zum Teil auch darauf, daß Rechtsnorm technische Normen ausdrücklich in Bezug nehmen(z. B. §16 Abs. 2 EnWG: §8 Abs. 2 Großfeuerungsanlage-VO).

Das Normungsverfahren muß im einzelnen gewissen rechtsstaatlichen Mindestanforderungen genügen. Die wichtigen inhaltlichen Anforderungen an die Ausgestaltung des Verfahrens lassen sich mit den Stichworten Sachverstand, Interessenausgewogenheit, Verfahrens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Publikation und Revision der Normen umschreiben. Hinzu kommt das formelle Erfordernis der Verfahrensverbindlichkeit.

Key Words : Technische Norm, Normung,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 V.(DIN), Rechtsnatur technischer Normen, Technische Normung als öffentliche Aufgabe, Grundsätze des Normungsverfahrens.
